

---

# 1381 해외인증자료

---



작성일자 2026.04.23. 기준,  
무단 도용 배포 금지

(문의)


## 일본 어린이용 PSC 마크

아래에는 해외 원문 문서를 번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해외원문 문서의 번역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 내 링크 또는 문서 하단 ※ 자료 출처의 링크를 통해 원문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제품 사양을 근거로 업체에서 직접 판단하시거나 관련 기관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는 국내/해외의 법률적 유권해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어린이용 PSC 마크

#### ▶ PSC 마크란?

	<p>PSCマーク (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 は、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に基づいて定められた安全マークであり、製品が国の技術基準に適合していることを示します。PSCマークは、特に危険性が高い製品とされる特別特定製品とそれ以外の特定製品に分類されます。</p> <p>今回の改正により、<b>子供用特定製品が新たに規定されました。</b></p>
--	--

PSC마크란? (소비생활용품 안전법의 안전마크)

PSC마크(Product Safety of Consumer products)는 소비생활용품 안전법에 근거하여 정해져있는 안전마크로서, 제품이 일본(국가)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나타냅니다.

PSC마크는, 특별히 위험성이 높은 제품이라고 여겨지는 **특별특정제품**과 그 외의 **특정제품**으로 분류됩니다. 이번 개정에 의해, **어린이용 특정 제품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 영유아용 완구에 대한 새로운 규제(乳幼児用玩具に対する新規制)

令和7年12月25日より、乳幼児用玩具(3歳未満向け玩具)に対する新たな規制が始まります。3歳未満向け玩具を取り扱う製造・輸入事業者の方は、国が定める技術基準への適合、対象年齢・使用上の注意などの警告表示の義務が課されます。販売事業者においては、**子供PSCマークの貼られていない3歳未満向け玩具を販売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

2025년(레이와7년) 12월 25일부터, **영유아용 완구(3세 미만용 완구)**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시작됩니다. 3세 미만용 완구를 취급하는 제조·수입사업자는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함과 대상연령·사용상 주의 등의 경고 표시의 의무가 부여됩니다.

판매사업자는 어린이용 PSC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3세 미만용의 완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 ▶ 영유아용 완구(3세 미만용 완구)란?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で販売規制の対象となるのは、

- ①遊戯に使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設計したもの(玩具であるもの)であって、
- ②出生後36月未満の乳幼児用のものです。

対象年齢3歳以上の製品や、3歳未満が使用する製品であっても、遊戯に使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設計されていないものについては、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の販売規制の対象にはあたりません。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에서 판매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 ①유희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완구인 것)으로서
- ②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용인 것

대상 연령 3세 이상 제품이거나 3세 미만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도, 유희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은, 소비 생활용 제품 안전법 판매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 ▶ 영유아용 완구(3세미만용 완구)의 범위

3歳未満の遊戯に加え、他の用途にも使用できる機能を有するもの(複合品)は、以下の整理とする。

イ 乳幼児用玩具に該当する部分とそれ以外の部分が物理的に**明確に区分できるもの**

→ 乳幼児用玩具と認められる**部分のみ**を規制の対象とする

ロ 乳幼児用玩具に該当する部分とそれ以外の部分が組み合わさって一体となっている製品

→ 乳幼児用の遊戯用と認められる機能を有するものは、**乳幼児用玩具として規制の対象とする**

※ただし、デザインの一環として動物、キャラクター等のマスコット、ぬいぐるみ等が用いられているだけであって、他の用途に使用されるも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なものについては、規制の対象とはしない。

3세 미만의 놀이에 더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복합품)의 경우

イ. 영유아용 장난감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물리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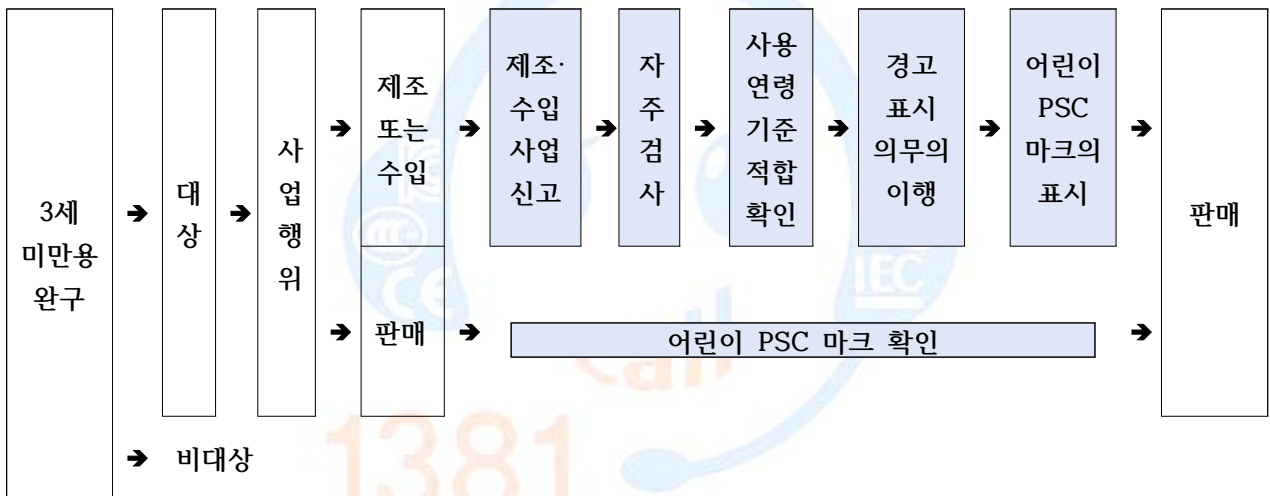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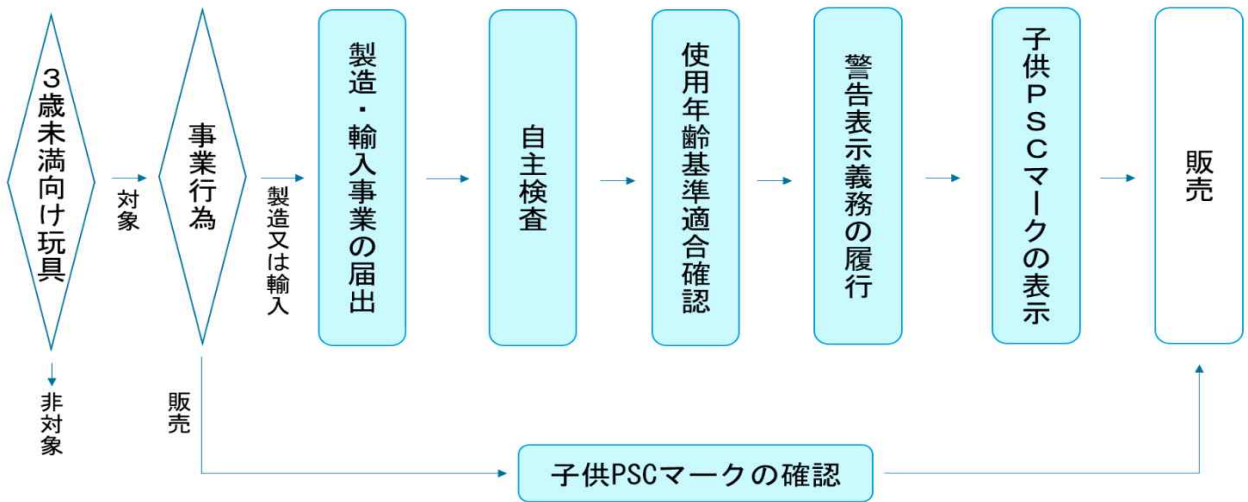
→ 영유아용 장난감으로 인정되는 **부분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

ロ. 영유아용 장난감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로 이루어진 제품

→ 영유아용 놀이용으로 인정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영유아용 장난감으로서 규제 대상에 포함**

다만, 디자인의 일환으로 동물·캐릭터 등의 마스코트·인형 등이 사용된 것에 한해, (영유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영유아용 완구(3세 미만용 완구)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수속(절차)



### 1. 제조·수입사업의 신고 (製造・輸入事業の届出)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영유아용완구의 제조 또는 수입을 행하는 경우, 일본(경제산업성분성 또는 관할의 경제산업국)에 대해 사업개시 신고를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의 구체적인 흐름이나,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레이와 6년 법개정 대응판]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법령의무실시 가이드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shouan/contents/20250828guide.pdf>)를 참조해주시시오.

### 2. 자주검사(기술기준적합확인) 自主検査 (技術基準適合確認)

영유아용 완구(3세미만용 완구)의 제조 또는 수입을 하는 사업자는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행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그것을 보존해야 합니다.

기술기준은 기술기준성령 별표 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기준은 대상이 되는 제품에 필요로 하는 성능을 나타내는 형태(성능규정화)로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ISO, EN, ASTM 등의 예시 규격에 정합하다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간주됩니다.

### 3. 사용연령기준적합확인(使用年齡基準適合確認)

영유아용 완구(3세 미만용 완구)에 표시하는 대상연령은, 사용연령기준(기술기준성령 별표 제1의2)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케이스는 사용연령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광고나 설명서로부터 3세 미만용 제품인 것이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높은 대상연령을 표시하는 것
- 시장에 유통되는 기능·치수 등의 특징이 유사한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명백히 높은 대상연령을 부여하는 것
- 일반소비자 등이 그 제품의 기능, 치수 등의 특징으로 추정하는 대상연령과 크게 모순되는 대상연령을 표시하는 것

또한, 대상연령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근거로서는 ISO/TR8124-8:2024, N°11 GUIDANCE DOCUMENT ON TOYS INTENDED FOR CHILDREN UNDER 36 MONTHS OF AGE OR OF 36 MONTHS AND OVER 또는 ASTM F963-23AnnexA1 등의 대상연령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4. 표시에 관한 의무(表示に関する義務)

영유아용 완구에는, 신고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도 ①경고표시, ②어린이 PSC 마크 두 가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표시는 제품의 표면 또는 용기포장 표면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알기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어느곳에도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봉된 취급설명서의 보기 쉬운 장소에 알기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해당 자료는 제품 분류 및 품목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 및 절차로서, 세부 품목에 따라 별도의 절차 및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제품별로 적용되는 강제 규제 또는 특정 인증에 대하여 해외정보자료를 무료로 조사하여 드립니다.

해외인증자료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자료실에 첨부되어있는 '1381 해외인증자료 신청 방법' 파일을 다운로드, 절차를 참조하시어 신청하시면 제품에 대한 해외 국가의 규제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조사해 드립니다.

#### ※출처

- 経済産業省：乳幼児用玩具に対する新規制(公式)  
[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kodomo/gangu\\_kisei.html](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kodomo/gangu_kisei.html)
- 乳幼児用玩具として規制の対象になる範囲PDFファイル(説明会資料より抜粋)  
[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kodomo/pdf/gangu\\_hani.pdf](https://www.meti.go.jp/product_safety/kodomo/pdf/gangu_hani.pdf)
- TUV SUD：PSCマークとは？2025年12月施行「乳幼児用玩具」に関する新規制のポイント  
<https://www.tuvsud.com/ja-jp/resource-centre/stories/jp-psc-mark>

## 참고

저희 1381인증표준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공개된 자료만 검색이 가능하므로 위의 내용이 최신 현지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상세한 최신 현지 규제에 대해서는 일본 현지의 수입업체나 일본 내 KOTRA 등을 통해 문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일본 현지의 수입업체 또는 아래의 현지 기관 등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 KOTRA 도쿄 무역관 : <https://www.kotra.or.kr/tokyo/index.do>  
TEL : (81-3) 3214-6951/FAX : (81-3) 3214-6950/[kotratky@kotra.or.jp](mailto:kotratky@kotra.or.jp)
- KOTRA 오사카 무역관 : <https://www.kotra.or.kr/osaka/index.do>  
TEL : (81-6) 6262-3831/FAX : (81-6) 6262-4607/[osaktc@kotra.or.jp](mailto:osaktc@kotra.or.jp)
-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 <https://www.kotra.or.kr/fukuoka/index.do>  
TEL : (092) 473-2005/6 /FAX : (092) 473-2007/[fukuoka@kotra.or.jp](mailto:fukuoka@kotra.or.jp)
- KOTRA 나고야 무역관 : <https://www.kotra.or.kr/nagoya/index.do>  
TEL : (81-52)561-3936/FAX : (81-52)561-3945/[nagoya@kotra.or.jp](mailto:nagoya@kotra.or.jp)
- KITA trade pro <https://www.kita.net/tradePro/tradeProMain/tradeProMain.do>

## 유의사항

**기업의 수출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술·학습 목적의 문의, 해당조사를 통해 수익활동을 하는 컨설팅, 대행기관 등으로부터의 문의는 대응이 불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실무(비용, 소요기간)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인증기관 및 컨설팅업체에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저희 정보센터에서는 대행기관(컨설팅회사)을 추천해드릴 수 없습니다. 관련 대행기관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컨설팅기관검색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전담대응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인증분야(CE, NMPA, FDA, CPNP,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 분야)에 대한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유선·모바일·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문의사항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해외시장 진출(예정)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주요 인증 분야 (유럽 CE, CPNP, 중국 NMPA, 미국 FDA, NRTL, FCC, IECEE, PSE 및 ESG·탄소중립)에 대한 문의 사항 상담 및 교육 지원
3. 상담절차 : 상담 채널 (유선/모바일/온라인) → 주요 인증 분야 문의 → 애로 해결 지원 (유선/1:1상담/게시판 답변)



4. 문의처
  - 유선 ARS 대표번호 : 1577-9911
  -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 검색 :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온라인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 전담대응반 (<https://www.smes.go.kr/globalcert/user/exclusiveCharge/exclusiveChargeOnaList.do>)
5. 운영방법
  - 관리기관 내 대응 채널(유선-ARS, 모바일-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상시 애로 접수·상담 운영
  - 미 해결시 방문형 컨설팅과 연계하여 인증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심층 지원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의 인증획득 성공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인증 교육 실시

※ 주 의 !

1381인증표준콜센터는 해외원문문서의 번역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간혹 경우에 따라 일부 내용을 번역할 경우에도 그 번역의 완전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문서 번역은 업체의 몫입니다. 상기 안내 사항은 각 항목 하단에 링크된 참고와 출처 페이지의 일부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아래의 자료 참고,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자료는 온라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귀사에서 본 자료를 활용할 시 정확한 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및 소요 기간은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항목, 시험 기관, 귀사의 관련 서류제출 및 대응 속도에 따라 변수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인증기관/시험기관의 실무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귀사 제품의 사양과 함께 해당 인증기관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종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효력이 없습니다. 1381콜센터에서 제공한 정보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우리 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종 신고, 이의제기 등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무단 수정/배포 불가합니다.

